



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

문서번호	토목과-15213
결재일자	2015. 12. 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★주무관	토목팀장	토목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	
우한상	신근주	박주완	12/24 안대회		
협	기획예산과장	이운영			
조	법률전문관	원종배			
	법제팀장	이상수			
	주무관	우은주			

**『성수동1가 39-2 부당이득금청구소송』
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**

2015. 4.



성 동 구

『성수동1가 39-2 부당이득금청구소송』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

우리구 성수1가 39-2(도로, 63㎡)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관련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되어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.

■ 민사소송 개요

- 사 건 명 :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
- 위 치 : 성수1가 39-2[지목 : 도로(63㎡)]
- 사건번호 : 2015가단 108582
- 당 사 자 : (원고)은정창, (피고)서울특별시 성동구

■ 청구취지 및 원인

● 청구취지

-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피고는 2015.3.27.부터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일 금100,000원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● 청구원인

- 원고는 서울 성수동1가39-2 도로 63㎡의 공유자로서 2009.7.14.(접수43700호)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
- 이사건 토지는 공로인 “성덕정길”, “성덕정9길”, “둘레7길”이 만나는 교차로에 포함된 토지로서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
- 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,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피고가 도로포장한 이후로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, 이사건

토지에 관한 사용·수익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포장하여 점유 사용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 발생한 지료상당 부당이득과 점유를 종료할때까지의 지료를 청구함.
(부당이득액과 지료는 추후 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액수를 확정)

■ 화해권고결정사항 및 검토의견

● 결정사항

1. 피고는 2016. 3. 31.까지 원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39-2 도로 63㎡를 미불용지보상 기준에 따라 매수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● 검토의견 : 이의신청

- 이 사건 토지는 토지사정(査定)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형성되어,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시점까지 약 90년이 넘도록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은,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토지매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■ 조치계획

- 상기와 같이 화해권고 결정 내용이 부당하므로 소송대리인에게 이의 신청하도록 통보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함.

따로붙임 : 1. 화해권고결정문 1부.

2. 위치도 및 현황사진1부. 끝.